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57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.

발 의 자:김경만·홍성국·김진표

강선우・송옥주・김홍걸

임오경 · 김정호 · 박홍근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, 누적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도 각각 3,855건과 1,791개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. 그러나 벤처펀드의 대부분이 공공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결성되는 등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.

현행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적고, 세제지원 기간이 짧아 투 자 유인책으로서의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%에서 10%로 확대하고,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% 소득공제하는 출자 및 투자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,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

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늘리고,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는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5"를 "100분의 10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3천만원"을 각각 "5천만원"으로, "5천만원"을 각각 "7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-----2025년 12월 31일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-----100분의 10----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 만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 ① 거주자가 대한 소득공제) ①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 ----2025년 12월 31일---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(제3호·제4호 또는

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 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은 100분의 100, 3천만원 초과 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,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금액 (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 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 다)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(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 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를 말한다)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(거주자가 출자일 또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)한다. 다만,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

<u>5천만원</u>
 <u>5천만원</u>
<u>7천만원</u>
<u>7천만원</u>

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6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